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이 정 율 위원 박 중 욱 위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자치행정과장)	일 자	질의	2011년 11월 29일
			답변	2011년 11월 29일
회 의	제1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평창축산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평창군지부 등에서 쓴 내역은 무엇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 할 수 있는지?
2. 도시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구제역 방역지원 군부대 지원팀 등에게 격려금을 준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내용

질문1에 대한 답변입니다

- 평창축산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평창군지부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평창축협하나로마트에서 홍보물품 및 격려물품을 구입한 건과 농협중앙회평창군지부에서 구제역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상품권을 구입한 건입니다.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 할 수 없습니다.
- 별첨 : 증빙자료 내역,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답변내용

□ 질문2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11년 연말 당시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각 유관기관에서 많은 인력이 지원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군부대 및 119안전센터에 도시과에서 격려금품을 지원한 건입니다
- 당시 구제역 창궐의 비상 상황속에서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방역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였고 방역대책본부 업무분장에 따라 이동통제초소반 운영을 관리한 도시과에서 통제초소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지원한 관내 유관기관에 격려금품을 전달한 것입니다.
- 별첨 :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운영계획

장 소 : 평창축협하나로마트(이석래)

지출방법 : 4140-1141-9532-6626(BC카드사)

위와 같이 급식 하였음을 확인함.

2010년 02월 11일

자치행정과 지방행정6급 최 원 규 (인)

영 수 증

영 수 증

평창축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5리131-1번지
대표자 : 이석래
사업자번호 : 225-82-01604
항상저희 평창축협 본소 하나로마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www.safeQ.go.kr
전화번호 : 033-334-2315 [S11111118]
2010.02.11 14:36 NO:001-0060 고하늘

평창축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5리131-1번지
대표자 : 이석래
사업자번호 : 225-82-01604
항상저희 평창축협 본소 하나로마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www.safeQ.go.kr
전화번호 : 033-334 2315 [S11111118]
2010.02.11 14:36 NO:002-0132 고하늘

상품명칭 단가 수량 금액

*우유류
233103 219,000 1 219,000

총 금액 219,000

할인금액 0

면세상품금액 219,000

과세상품금액 0

부가세 금액 0

공 병 0

받을금액 219,000

신용카드금액 219,000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번호: 4140-1141-9532-****

유효기간: 2011/02

카드사명: BC 카드

승인번호: 72764771

상품명칭 단가 수량 금액

*우유류
233103 219,000 1 219,000

총 금액 219,000

할인금액 0

면세상품금액 219,000

과세상품금액 0

부가세 금액 0

공 병 0

받을금액 219,000

신용카드금액 219,000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번호: 4140-1141-9532-****

유효기간: 2011/02

카드사명: BC 카드

승인번호: 72764771

중계사: KICC

2011/4/4

□ 물품내역 : 한우 1set

□ 구입처 : 평창축협하나로마트

□ 지출방법 : 4140-1141-9532-6626(BC카드사)

위와 같이 급식 하였음을 확인함.

2010년 08월 19일

자치행정과 지방행정6급 최찬웅



영 수 송

평창축협하나로마트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나로131-1번지
 대표자 : 이석래
 사업자번호 : 225-82-01604
 항상저희 평창축협 본소 하나로마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www.safeQ.go.kr
 전화번호 : 033-334 2315 [922222222]
 2010.08.19 16:22 NO:001-0053 이현희

상품명	단가	수량	금액
한우등심/냉장/국			
23127	250,000	1	250,000
합계			250,000
카드상환금액			250,000
현금상환금액			0
부가세 금액			0
공방 금액			0
반올금액			250,000
신용카드금액			250,000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번호 : 4140 1141 9532 6626
 유효기간 : 2011.08.01 ~ 2012.07.31
 카드사명 : BC카드
 승인번호 : 0047 0383 중계사 : KIB
 거래점NO : 728022952
 매출금액 : 250,000원 일 시 물

*로 표시된 상품은 반값 상품입니다.
 반품 및 교환시에는 영수증을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확인은 소비자의 현명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4.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다음의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2)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5)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 나. 축의·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등록번호	자치행정과-18296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개

주무관	자치행정담당	자치행정과장	부군수	군수
				12/25
	신향민	이용재	김희권	김종환이석래
협조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김봉기 이상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운영계획

평창군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운영계획

지난 12 21(火) 대화면 신2리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의 체계적인 구성·운영과 총력 대응으로 더 이상의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퇴치해 나가고자 함.

□ 개 요

- 운영기간 : 2010. 12. 22(水) ~ 상황 종료시까지
 - ※ 방역대책본부 이동설치 운영(군청 지하상황실) : 12. 23(09:00 ~)
- 장 소 : 평창군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지하 종합상황실)
- 구성운영 : 1본부 7개반 37명 [별첨] 방역대책본부 구성도, 근무자 명단
 - 본부장(군수), 총괄지휘(부군수), 반장(실과소장 6명), 반원(7~6급 26명)
 - ※ 농림수산식품부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1, 군경지원 2(36사단, 경찰서)
- 근무 방법 : 2인 1조 2교대 근무(1인 12시간)
- 주요 역할
 - 방역 종합상황 유지 및 수시 모니터링 보고
 - 이동통제 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 기반 축산시설 방역조치 강화
 -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소독, 임상관찰 실시여부 점검
 - 사료·동물약품 운반차량 진입 차단
 -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병역조치 강화
 - 사료 운반차량, 축산 종사자 농장출입 전·후 소독, 농장방문 억제
 - 지역 방송, 마을 방송 등 군민 및 양축농가 홍보 강화
 - 임상증상 및 신고·방역요령,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자제 등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근무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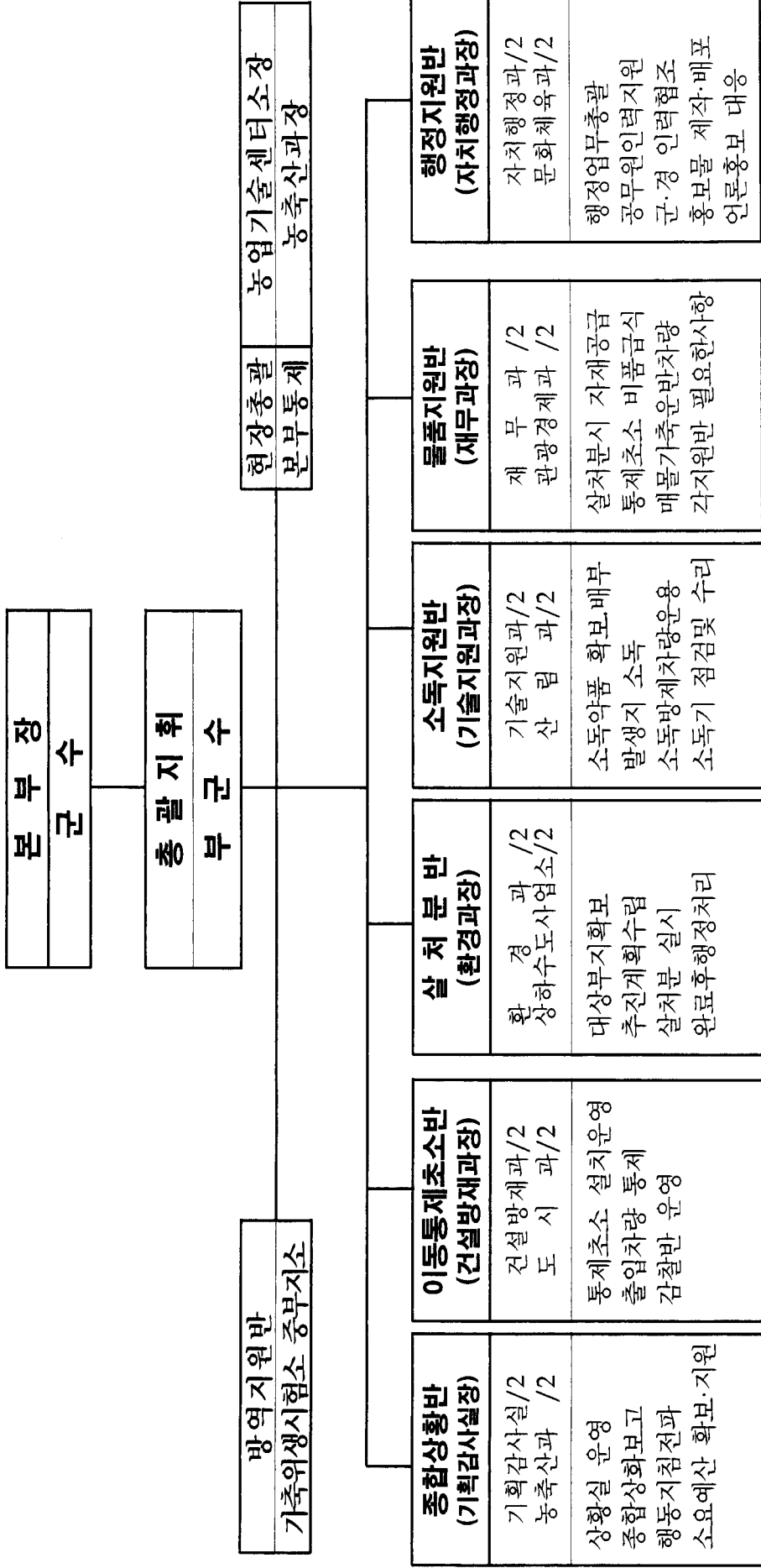
연번	소 속	실과소	직위(급)	성 명	비 고
계	6개 반	12개 실과소		30명	
1	종합상황반	기획감사실	실장	이경식	반장
2			행정6급	최영훈	
3			행정6급	이시균	
4		농축산과	농업6급	김영기	
5			농업6급	조태영	
6	이동통제초소반	건설방재과	과장	박현창	반장
7			시설6급	지원준	
8			행정7급	김민옥	
9		도시과	행정6급	이정의	
10			시설7급	김복기	
11	살처분반	환경과	과장	장동기	반장
12			행정6급	이정균	
13			행정6급	김두기	
14		상하수도사업소	행정6급	조철현	
15			환경7급	이일주	
16	소독지원반	기술지원과	과장	백순규	반장
17			농촌지도사	김상래	
18			농촌지도사	최의규	
19		산림과	행정6급	김대승	
20			녹지7급	이미진	
21	물품지원반	재무과	과장	김진영	반장
22			행정6급	류지웅	
23			세무7급	정석구	
24		관광경제과	농업6급	조웅현	
25			행정7급	김순례	
26	행정지원반	자치행정과	과장	장하진	반장
27			행정6급	이용섭	
28			행정7급	박형숙	
29		문화체육과	행정7급	강경순	
30			사서7급	김영진	

※ 농림수산물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군·경 등 5명 별도

※ 살처분의 경우 농축산과 전문인력 지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구성도

총 6개반 37명



※ 방역대책본부 지원 : 5명(농림수산식품부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 강원도기축위생시험소 1, 36사단 1, 평창경찰서 1)